

의안번호	2214025
의 퇴 인	고민정 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C5992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	(제2항)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「교육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·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·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<u>예산액</u> 으로 한다.	의무규정
2	안 부칙 제2조 (유효기간)	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 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부칙 제2조 (유효기간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)의 일반회계 전입 구조를 변경하고,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- 특별회계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·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, '25년 기준 16조 1,272억 원이 편성됨
 -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차입금임¹⁾

1)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
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-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, '25년 기준 16조 3,77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98%를 차지함
- 한편, 특별회계가 자체 수입을 초과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차입이 가능하나, 2023년 설치 이후 차입금으로 세입을 충당한 사례는 없음
- 이 중 전입금은 재원에 따라 ①교육세 지원분과 ②교육부 일반회계 전출분으로 구분됨²⁾
 - (교육세 지원분)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
 - (일반회계 전출분)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에서 전출하도록 정하는 금액
- * [참고자료] 2025년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구성
-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교육세 지원분 규모를 변경하고,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
 - (현행)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우선 배분한 후, 나머지를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(5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50%)에 배분
 - (제정안) 교육세 중 금융·보험업분을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배분하고, 나머지를 영유아특별회계(6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40%)에 배분

[표] 개정안 시행 시 교육세 배분구조 변화

현행	개정안
○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분을 우선 배분 ○ 나머지를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(5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50%) 재원으로 활용	○ 교육세 중 금융·보험업분을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배분 ○ 나머지를 영유아특별회계(6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40%) 재원으로 활용

자료: 「2025~202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제7조에 따른 차입금
4. 그 밖의 수입금
- 2)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
 - 제6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정부는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-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.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회계가 유지되어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
 -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으로 특별회계의 전입금 규모가 변동할 수 있으나, 이는 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
 - 따라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특별회계 연장으로 ①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②신규 사업이 편성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임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관련 사업의 확대·신규 편성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2025년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구성

(단위: 억원)

일반회계(세출)		→	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(세입)	
특별회계 전출금	142,082		일반회계 전입금	163,772
교육세 지원분	21,690		전년도 세계잉여금	1,209
			면허료 및 수수료	60
			기타재산이자수입	93
			기타경상이전수입	1,500
			계	166,635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세부 수치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

자료: 정부 예산안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